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례지원 운영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7호

###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례지원 운영 지침 제정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례지원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사례지원에 따른 운영 및 부대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표준화와 관리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상담소 사례지원에 따른 운영 및 부대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내담자”란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말한다.
- ② “사례지원”이란 상담소에서 내담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말한다.
- ③ “부대비용”이란 상담소에서 사례지원을 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④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란 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⑤ “변호사”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외부상담사”란 상담소에서 내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위촉한 상담사를 말한다.
- ⑦ “아이돌봄서비스”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아이돌보미’)가 보호자인 내담자의 상담 중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⑧ “긴급지원”이란 내담자의 피해 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되는 비용 및 물품 일체를 말한다.

**제4조(부대비용 지급 영역)** 내담자 사례지원에 따른 부대비용 지급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상담’
2. 변호사 ‘법률자문’
3. 외부상담원 ‘회기상담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5. 피해자 긴급지원 ‘의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물품’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상담비)** ① 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상담비는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상담은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실시 및 임상적 자문을 말하며, 총3시간이 소요된다.
- ③ 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상담의 지급기준 및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법률자문비)** ① 법률자문비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률적 소견 및 정보 제공을 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률자문의 지급기준 및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기상담 지원)** ① 회기상담 지원비는 상담소에서 내담자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 외부상담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담소의 외부상담사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마지막 일자이며, 내부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 ③ 외부상담사의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심리 관련 석사 졸업 이상인 자

2.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
  4.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각100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
  5. 출장상담이 가능한 자
- ④ 외부상담사의 상담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상담, 가족상담
  2. 주말상담, 출장상담, 야간상담
  3. 그 외 지속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담자 상담
- ⑤ 회기상담 지원의 지급기준 및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아이돌봄비)** ① 아이돌봄비는 보호자인 내담자 상담 중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아이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하며,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
  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과정을 수료한 자
  5. 기타 아동, 청소년 대상 놀이, 보호, 돌봄, 치료 등 관련 교육 이수증, 수료증 및 자격증 소지자
- ③ 자녀의 연령은 만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한다.
- ④ 아이돌봄비의 지급기준 및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9조(피해자 긴급지원비)** ① 피해자 긴급지원비는 내담자의 피해 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비용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긴급지원비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교통비
  3. 숙박비
  4. 식비
  5. 기타물품
- ③ 피해자 긴급지원 각 영역의 지급기준 및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사례지원에 따른 부대비용 지급기준

### 1. 지급기준

영역	내용	지급액	비고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상담	최초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심리평가 2시간 소요 해석상담 1시간 소요
변호사	법률자문	최초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외부 상담원	회기상담 지원	1회당 50,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비	1회당 30,000원	
피해자 긴급지원비	의료비	실비 원칙	
	교통비	실비 원칙	
	숙박비	1박당 70,000원	최대 3박
	식비	1식당 8,000원	최대 9식
	기타물품	실비 원칙	
기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준용

## 2. 세부기준

영역	세부내용	비고
<p>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상담’</p>	<p>- 2022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편성 세부지침 내 자문 및 심사수당 - 1. 강사수당 지급기준 - 바. 자문 및 심사수당 (자문수당)에 준하여 지급</p>	<p>3시간 소요</p>
<p>변호사 ‘법률자문’</p>	<p>- 2022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편성 세부지침 내 자문 및 심사수당 - 1. 강사수당 지급기준 - 바. 자문 및 심사수당 (자문수당)에 준하여 지급</p>	
<p>외부상담원 ‘회기상담 지원’</p>	<p>- 본 소 외부상담원에 위촉된 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이하 내담자)을 대상으로 회기상담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1회당 5만원 지급. 지급 시, 상담내용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회기기록지, 모니터링기록지, 종결보고서, 출석부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최대 10회기까지 지원 가능 함. 단, 내담자의 폭력심각도 및 외상도를 고려하여 내부 논의를 통해 회기를 연장하여 지원가능</p> <p>- 회기상담은 대면상담(내방, 출장)을 원칙으로 하나, 내담자 개인사유 및 통합상담소 내부 운영의 문제로 당일 취소될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체 진행 가능</p> <p>- 본 소를 내방할 수 없는 내담자가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내부 논의를 통해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선정하여 최대 10회기까지 지원 가능</p>	
<p>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비 지원’</p>	<p>- 보호자인 내담자 상담 중 돌봄이 필요한 만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가능</p> <p>- ‘아이돌봄비’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내담자 심리상담 중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1회당 3만원을 지급</p>	

영역	세부내용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 긴급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비</p> <p>-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또는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 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 기관을 원칙으로 함. 단, 내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 온 기관이거나 거주지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 이 7년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성폭력 피해에 대한 치료보호 비용 지원&gt;</b></p> <p>①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p> <p>② 100만원(누적금액)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 시 주치의 소견이나 내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p> <p>③ 500만원(누적금액) 이상 의료비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 첨부</p> <p>④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 비뇨기과 등)</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성폭력 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지원&gt;</b></p> <p>① 1인 병실 등 입원비 지원 조건 완화,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p> <p>② 지적장애인 등 재피해 예방을 위한 피임시술 지원(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p> <p>③ 수술 이후 회복에 필요한 진료와 투약 비용, 출산 결정시 출산 관련 의료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lt;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치료보호 비용 지원&gt;</b></p> <p>①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p> <p>② 300만원(누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여부 결정</p> <p>③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p> <p>④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p> <p>⑤ 진단서 발급비용</p> </div>	

영역	세부내용	비고
	<p>교통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등), 택시비 실비 지급</li> <li>- 내담자 수사·치료·재판 과정동행, 모니터링 동행자(종사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의 교통비 지원 가능</li> </ul>	
	<p>숙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쉼터 이동 및 입소가 어려운 내담자의 경우 최대 3일 지원 가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긴급 숙박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피해자&gt;</b></p> <p>① 성폭력, 가정폭력 사안으로 신고 되어 경찰에 의해 상담소로 연계된 자로 긴급쉼터로의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자(쉼터 입소자 만석, 심야 시간 등)</p> <p>② 성폭력, 가정폭력 사안으로 신고 되어 경찰에 의해 상담소로 연계된 자로 긴급쉼터 입소가 거절된 자(쉼터 지킴 불이행 가능성, 성별 차이, 쉼터 퇴소자 등)</p> <p>③ 경찰에서 제공하는 「임시안전숙소제도」의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자</p> <p>④ 이외 긴급하게 숙박시설, 숙박비 지원이 필요한 자</p> </div>	
	<p>식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진술녹화, 심리치료, 원거리 이동, 긴급보호 숙박·이용 등 내담자 지원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최대 9식 지원 가능</li> <li>- 내담자 수사·치료·재판 과정동행, 모니터링 동행자(종사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의 식비 지원 가능</li> </ul>	
	<p>기타 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의복, 간식 등)은 본소에서 구입 후 지원 가능</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킴,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에 준용하여 지원 가능</li> </ul>	